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洞)” 명시〉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13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洞)” 명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07. 02.
3. 회부연월일 : 2025. 07. 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도, 시·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洞)” 명시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행정구역의 종류에 “동(洞)”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생략)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u>시·읍 또는 면</u> 에 둔다.	② ----- ----- ----- ---- <u>시·읍·면 또는 동</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¹⁾>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

○ 임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각종 행사장 안전지원 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및 역할

구분		역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³⁾	
전문 의용소방대 ⁴⁾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⁵⁾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2024.12.31. 기준):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자료: 소방청)

1)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또한, 현행법은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시·읍 또는 면에 두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제2항),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제3항).

즉,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조직은 원칙적으로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인 ‘시’ 지역 및 하위 행정단위인

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역의용소방대도 일반의용소방대(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됨. 소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밑에 하위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데, 지역의용소방대는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와 함께 활동함.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5)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읍’과 ‘면’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③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할 구역을 정해서 설치할 수 있음.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위 행정단위	비고
<u>도</u>			
- 도	<u>시</u> ⁶⁾	<u>읍</u> ⁷⁾ - 리	
- 강원특별자치도		<u>면</u> ⁸⁾ - 리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군	동 ⁹⁾	
- 제주특별자치도 ¹⁰⁾	-	<u>읍</u> -리	
		<u>면</u> -리	
		행정시-동	
		행정시- <u>읍·면</u>	
<u>시</u>			
-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동	
- 세종특별자치시 ¹¹⁾	-	동	
		<u>읍</u>	
		<u>면</u>	

(※ 굵은 글씨로 밑줄 친 행정구역: 현행법에 규정된 의용소방대 조직 단위)

- 6) 시(市)는 도시 지역을 의미하지만, 시의 관할 구역이 넓어서 농촌·도농복합 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시(예: 천안시, 전주시, 여주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모두 행정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 7) 주로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일정 요건 충족 시 2만 명 미만도 가능)
- 8) 읍보다 인구가 적고 농촌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인구가 6천 명 이상인 지역
- 9)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주거 지역이 많음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

소방청은 아직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용소방대를 직접 설치한 경우는 없고¹²⁾ 실제로는 일선 소방서¹³⁾를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조직·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① 특별시·광역시의 소방서에는 주로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전문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별로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② 도(道) 지역의 소방서는 주로 관할 읍·면 또는 동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¹⁴⁾.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2) 광역단체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의용소방대는 실무적으로 일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도와 재난현장에 출동하거나 재난예방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의용소방대는 일선 소방서의 소방업무 보조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 시·도지사가 직접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더라도 재난현장에 출동하거나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때 지휘·감독할 권한은 실제로 일선 소방서 밖에 없다보니 광역자치단체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설치되어 있음.

13) 일선 소방서는 일반적으로 특·광역시에는 자치구 단위로, 도(道)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되나 반드시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14) 소방청은 의용소방대가 반드시 읍·면·동 한 개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묶어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의용소방대 조직 구성 사례(예시)>

지 역	의용소방대 조직
서울 강동소방서 (도시지역)	혼성대, <u>천호지역대</u> , <u>고덕지역대</u> , <u>암사지역대</u> , <u>길동지역대</u> , <u>강일지역대</u>
대전 유성소방서 (도시지역)	남성대, 여성대, 전문대, 도룡지역대, 전민지역대, 구암지역대, 신성지역대, 노은지역대
경기 안양소방서 (도시지역)	안양남성대, 안양여성대, 만안의용소방대(혼성대), 동안의용소방대(혼성대), 중앙시장의용소방대(혼성대), 호평의용소방대(혼성대), 대학생전문대
경기 광주소방서 (도농복합)	광주남성대, 광주여성대, 광남남성대, 초월남성대, 초월여성대, 오포남성대, 오포여성대, 곤지암남성대, 곤지암여성대, 남한산성남성대, 퇴촌남성대, 도척남성대, 남종전담대
충남 천안서북소방서 (도농복합)	서북남성대, 서북남성 쌍용지역대, 서북남성 두정지역대, 서북남성 서부지역대, 서북남성 불당지역대, 서북여성대, 성거읍 남성대, 성거읍 여성대, 입장면 남성대, 입장면 여성대, 성환읍 남성대, 성환읍 남성대 북부지역대, 성환읍 여성대, 직산읍 남성대, 직산읍 여성대
경남 거창소방서 (농촌지역)	거창읍 남성대, 거창읍 여성대, 남상면 남성대, 남상면 여성대, 신원면 남성대, 신원면 여성대, 주상면 남성대, 주상면 여성대, 웅양면 남성대, 웅양면 여성대, 위천면 남성대, 위천면 여성대, 마리면 남성대, 마리면 여성대, 북상면 남성대, 북상면 여성대, 고제면 남성대, 고제면 여성대, 가조면 남성대, 가조면 여성대, 가북면 남성대, 가북면 여성대, 남하면 남성대, 남하면 여성대, 산악전문대, 중장비 전문대
제주 제주소방서 (특별자치도)	<u>연동의용소방대</u> , <u>오라동의용소방대</u> , <u>화북동의용소방대</u> , <u>노형동의용소방대</u> , <u>외도동의용소방대</u> , <u>아라동의용소방대</u>
제주 서부소방서 (특별자치도)	한림남성대, 한림여성대, 금악남성대, 비양전담대, 애월남성대, 애월여성대, 하귀남성대, 하귀여성대, 대정남성대, 대정여성대, 가파전담대, 마라전담대, 한경남성대, 한경여성대, 고산남성대, 안덕남성대, 안덕여성대
세종 남부소방서 (특별자치시)	연기면 남성대, 연기면 여성대, 장군면 남성대, 장군면 여성대, 금남면 남성대, 금남면 여성대, <u>한솔동 남성대</u> , <u>한솔동 여성대</u> , <u>아름동 남성대</u> , <u>아름동 여성대</u> , <u>어진동 남성대</u> , <u>어진동 여성대</u> , <u>보람동 남성대</u> , <u>보람동 여성대</u>

※ 밑줄친 의용소방대는 동 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임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종류에 “동(洞)”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여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는 도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의용소방대 설치 단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행정단위	현 행	개정안	비 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필요시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가능
시, 읍, 면	○	○	
동	×	○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을 명시할 필요성·효과성 및 입법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을 명시할 필요성·효과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도 필요한 경우 동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제2조제3항), 실제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도 동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방청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현장활동보다는 화재진압 보조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화재 시 주민 대피, 주변 교통 정리 등 화재 현장 통제 활동과 식수·배식 봉사 활동, 피해복구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을 명시하는 경우, ‘읍’이나 ‘면’이 없는 도시 지역에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주민 생활권 중심의 화재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음으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동”을 명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비용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현재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중심으로 지역별·관할 여건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고 현행법 제2조제3항도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 제2조제2항에 동(洞)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동(洞) 지역에 이미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 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의용소방대 개요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전문 의용소방대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2024.12.3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전문·전담
대수(대)	3,979	1,419	1,306	172	1,082
현원(명)	92,484	35,571	30,742	4,281	21,890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0,137	6,447	1,386	5,712	88,902	34,815	41,872	91,003
인원 (명)	1,286,330	33,539	8,495	27,050	446,142	145,443	198,567	427,094

참고 2 해외의 의용소방대 설치 범위

(자료: 소방청)

국가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범위
일본	소방조직법	시정촌 소방단은 각 시정촌에 의해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 ※ 동 단위 설치 가능
독일	주별 법령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소방대를 설치 해야 하며, 필요 시 하위 지역 단위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동 단위 설치 가능
뉴질랜드	Fire and Emergency NZAct	법령상 자원봉사 소방대를 지역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 ※ 동 단위 설치 가능